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이유

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『개인정보보호법』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우리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‘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’ 항목 중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개인정보보호법」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나. 합 의 : 해당 없음

다. 예 산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4. 9. 30.~ 2014. 10. 20.)

2) 부패/인권/성별/아동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